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Q&A

2024. 4.

Q1

□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A1

-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나 중대산업재해의 예시로는, 병원 내 시설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거나, 기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직업성 질병자 :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관련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Q2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A2

-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와 총괄 책임자, 그리고 도급인과 수급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시스템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어 사업장 내 임직원이 아닌 일반 시민, 고객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Q3

□ 의료기관에서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3

▷ 안전관리 담당자는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하고, 관계행정기관에 상황을 보고하며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조치 등을 시행하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을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장) 등은 상황 종료 후 피해 원인 조사 및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국토부 발행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02 주요 의무사항 이행 가이드라인(p.57)

Q4

□ 의료기관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4

- ▶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장) 등은 재해 발생 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장)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 받아야 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실무자와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고용노동부 발행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p.94)

Q5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시기가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5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부과 및 처벌규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2.1.27.)부터 적용되었지만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영업·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기관)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1.27.)부터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 및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규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시행일)]

관련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Q6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가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 의료기관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6

- ▶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은 의료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므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규정은 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산 재해, ②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9.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것

Q7

□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장)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인가요?

A7

- ▶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수립,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 종사자 참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제거·통제 방안 마련(재해 발생 시 반드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충분한 인력과 예산으로 안전관리, 꾸준한 점검으로 재해 예방, 시설·사업장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 위험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전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의료기관의 경우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로는 감염 발생 예방을 위해 소독과 주사기 등 1회용품 사용 후 폐기를 철저히 하고 감염자 발생 시 즉시 분리하는 등 적극적인 감염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방사선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과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 등이 있을 것입니다.

관련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8

□ 의료기관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하나요?

A8

- ▶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 그러나 의료기관이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가 총 3명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전담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은 물론 이를 지원하는 등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Q9

□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장) 등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사업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나요?

A9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주차장 건설에 관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었고 의료기관이 그 공사 현장에 대해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 등은 해당 재해에 대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Q10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장) 등은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요?

A10

-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장) 등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장) 등이 법 제4조 또는 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고 중대산업재해 사고와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처벌하게 됩니다.
- ▶ 그러므로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장) 등이 평소 법 제4조 또는 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인 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법 위반 주체로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Q11

□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장) 등”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요?

A11

- ▶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형식상의 직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전체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책임과 권한·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병원의 경우 실제로 병원 사업을 총괄하는 병원장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Q12

▣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A12

▶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장)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대시민재해는 동일한 사고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13

▣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손해배상이 민법이 정한 손해배상과 차이가 있나요?

A13

- ▶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는 반면,
- ▶ 중대재해처벌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라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장)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 ▶ 그러므로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하여 보험상품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전에 가입해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Q14

□ 처벌 및 손해배상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A14

-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합니다.
 -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해를 입은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경과의 정도가 판단의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 법인 또는 기관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경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관련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Q15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장)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되나요?

A15

-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및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을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